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60134 판결 [점유회수청구]

전 문

원고1. A

2. 주식회사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현주

피고D

변론 종결2020. 10. 16.

판결 선고2020. 12.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70,000,000원, 원고 C에게 2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1997년 무렵부터 별지 목록 각 항 '1동의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그 후 시행자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2016. 2. 24.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16.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 내지 F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들을 담보하기 위한 적법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7. 9. 13.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점유 침탈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인 위 피담보채권액의 일부로서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270,000,000원, 원고 C에게 2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2017. 9. 13.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외벽 등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게재되어 있고, 위 건물의 내벽, 엘리베이터 등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2017. 9. 13. 원고들이 위 건물의 개별 호수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법원 G)에서 작성된 2016. 6. 16.자 현황조사서에서도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 명의로 작성된 2015. 9. 21.자 무상거주확인서에는 그가 이 사건 건물 중 I동 J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F의 전 대표이사이자 원고 A의 동거인인 K 명의로 작성된 2015. 8. 31.자 무상거주확인서에는 그가 위 건물 중 L동 M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2017. 9. 13.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E 내지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들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2017. 9. 13.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이 2017. 9.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하현우

판사오선아

판사공병훈

별지